

Deloitte.



2023.11 | 제4호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 리더 메시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Insights』 제4호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평가’,**  
**‘이사의 회사 기회·자산 유용금지 의무’,**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내부통제 방향’** 등의  
전문가 기고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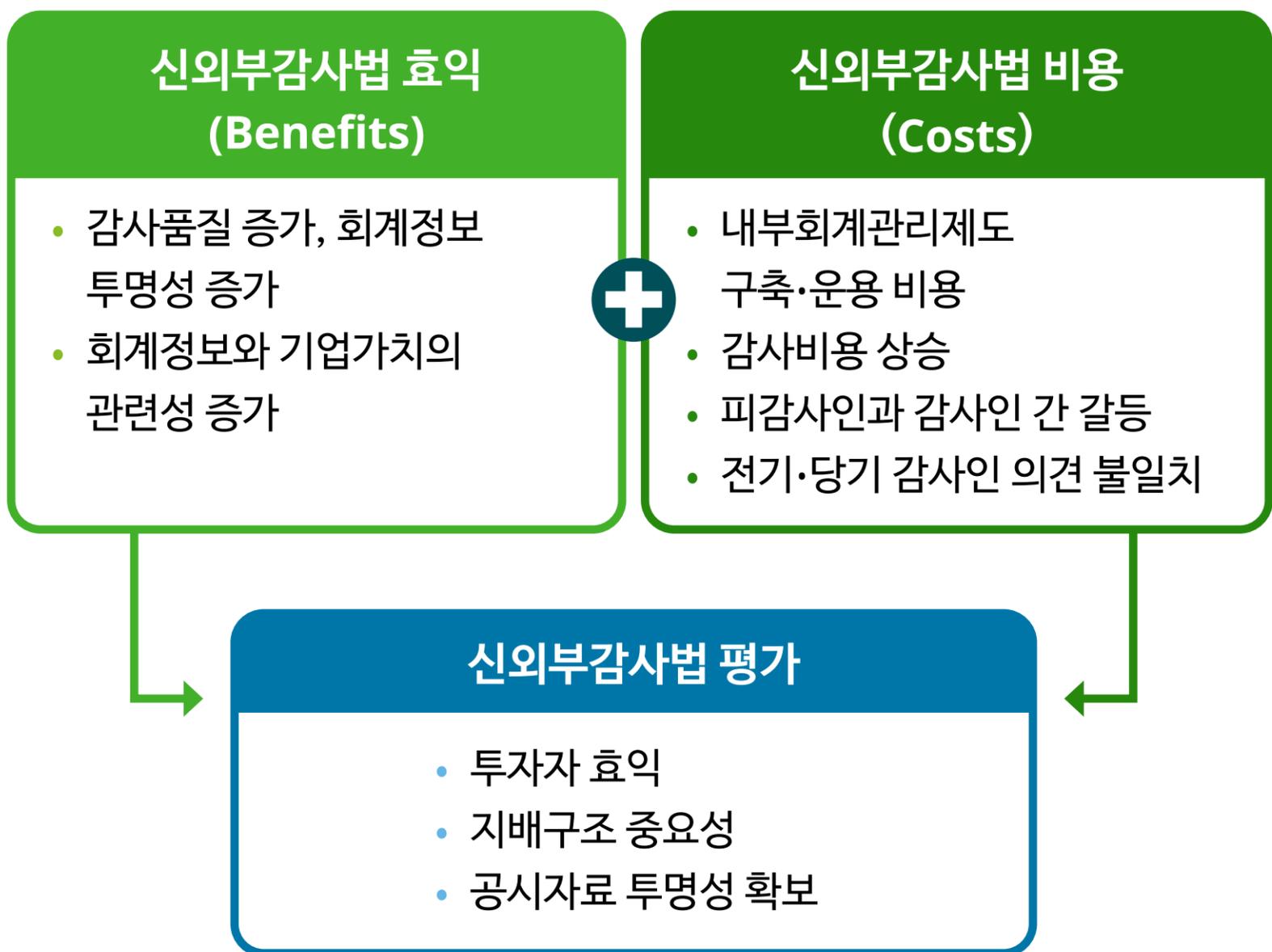
또한,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 및 데이터 분석  
(부정조사·보고의무, KOSPI 200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과  
주목할 최신 규제동향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 신외부감사법이 기업에 정착하여 투명·지속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되도록 지배기구의 지속적인 관심·노력 필요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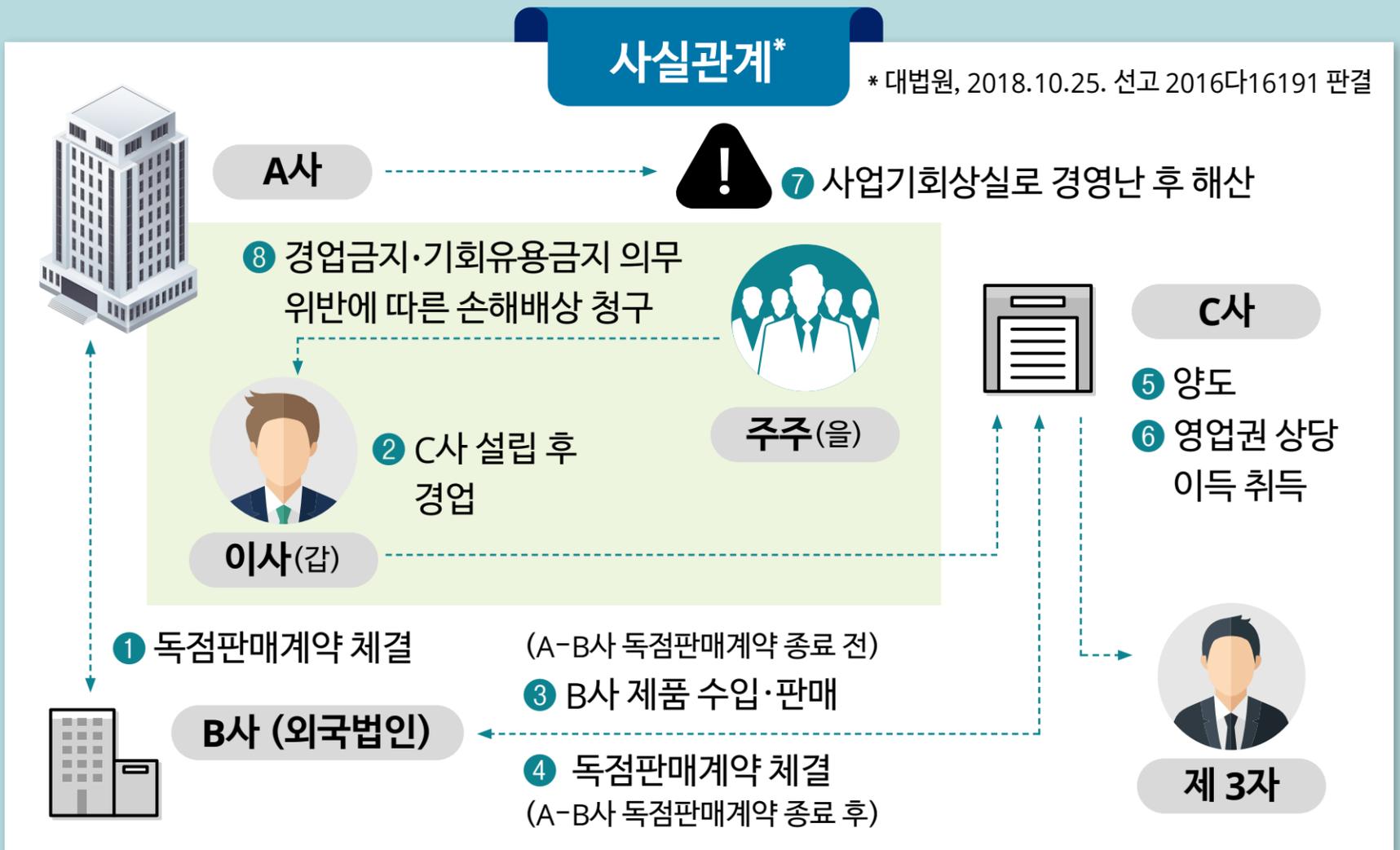
## 신외부감사법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해당 법의 효익·비용 평가를 통한 갈등 해소 및 제도개선 노력
-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된 효익·비용 검토
- 기업의 지배구조와 외부감사인의 노력이 필요

#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의무

“ 이사는 경업금지 의무 및 기회유용 금지 의무 위반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충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 대법원 판결



A사 이사(갑)

- 경업금지 의무 위반
- 기회유용 금지 의무 위반
-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충실 의무 위반
- ▶ A사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A사의 영업수익상실액 + A사가 상실한 B사와의 독점판매계약권 가치
- ▶ A사의 손해액으로 인정



A사

##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 의무 Point

- 이사는 회사수행사업이나 직무상 지득한 정보·기회를 본인/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금지 (상법 제397조의2)
- 상기 의무 명문화 후 이사의 동 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
- 향후 법원은 '회사기회', '이익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동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임

#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향후 개정 시행 예정인 법령 대응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체계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세정 Senior Manager

## 명세서

내부통제 지배구조에 대한 **조직도**·  
**경영진별 책임**을  
개괄적으로 표현



책무구조도

## 책임지도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책임이행**  
**조치활동**을 상세 기술

## 책무구조도 is ...

- ▶ 금융회사가 ▶ 실제수행업무 기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구분·확정**
- ▶ 책임범위 내 사고발생시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제재 또는 면책을 골자로 함**

##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개정 법안

- ☞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2조의2 신설)
-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안 제30조의2 신설, 안 제30조의4 신설)
- ☞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안 제30조의3 신설)
-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2 신설)

#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

“ 부정조사·대응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시 지속가능경영에 치명적 영향 가능성이 있어 감사(위원회)의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수립·성실한 감독 강조 ”

## 부정의 특성 - 회계감사기준 240

- 부정은 광범위한 법률적 개념이지만, 감사인은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 관심을 둔다. 감사인에게 관련성이 있는 의도적 왜곡표시에는 부정한 재무보고에 의한 왜곡표시와 자산의 횡령에 의한 왜곡표시가 있다.

## FY2022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부정 관련 안건 비중

감사위원회 총 안건 수  
3,292건 (100%)

22건  
(0.6%)

부정보고·대응안건 수

## 부정(자금사고 등) 대응방향

### Tone at the top

-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
- 내부신고제도 성실 운영
- 전사 윤리 교육 강화



### 취약점 진단

- 자체점검 또는 외부진단
- 설계 취약점·운영 미비점 점검
- 부정 위험요소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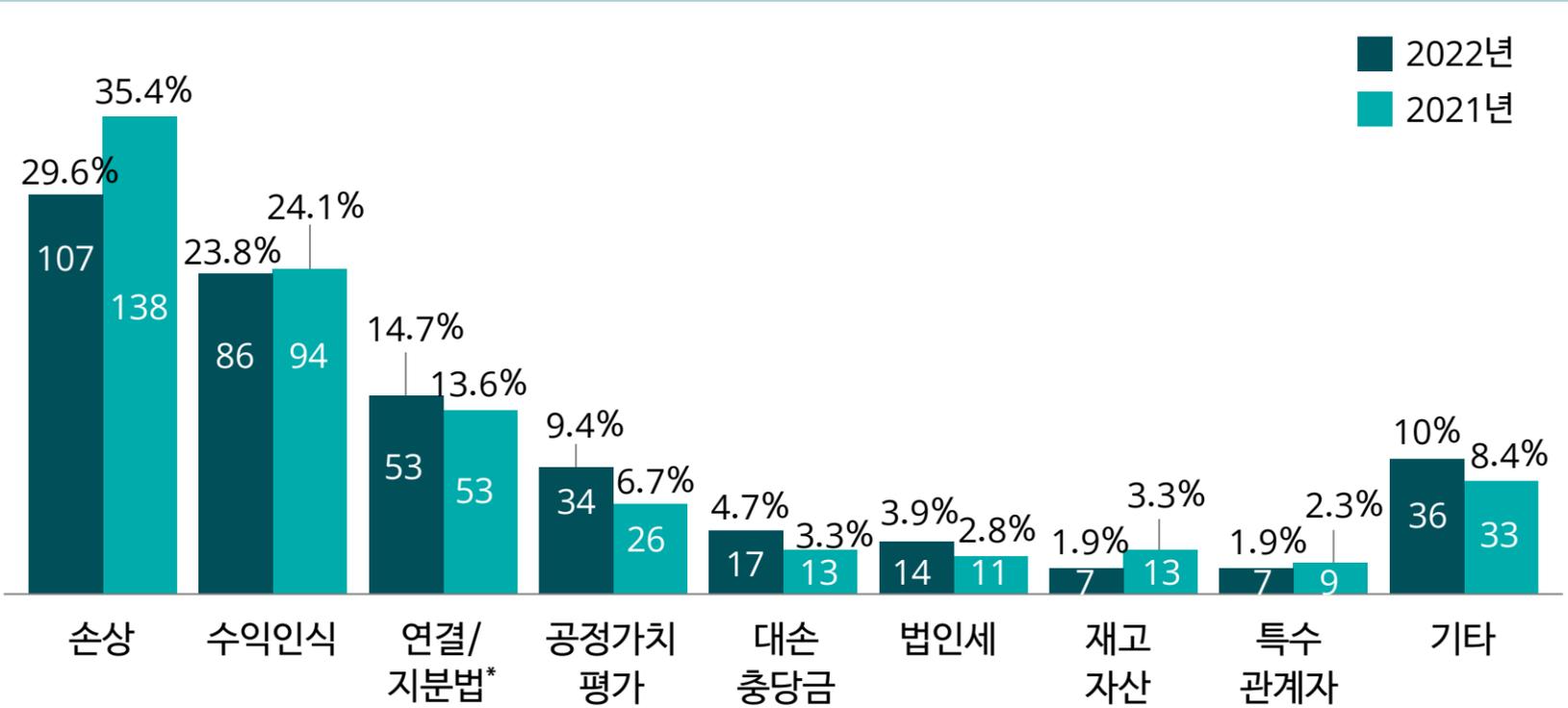
### 프로세스 개선

- 부정예방·적발 절차 개선
- 주기적 모니터링 절차 구축
- 고위험 직군 순환배치 등 고려

# KOSPI 200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2021년, 2022년 모두 '손상', '수익인식', '연결/지분법'이 상위권 ”

추정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항목, 감사위험이 높거나 복잡한 회계처리로 인해  
유의적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 주로 선정



\* 사업결합 포함



## 손상

- 손상평가지 회수가능액 측정에 경영진의 유의적 판단·추정 수반
- 경영진 가정에 따라 상이한 추정결과



## 수익인식

- 부정 관련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 위험으로 간주
- 계약구조 복잡시 수익인식 시점·방법·금액 등에 높은 수준의 경영진 판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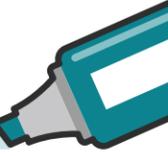
## 연결/지분법

-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기업 결합 증가 추세, 방법/계약 조건의 다양·복잡화
- 영업권 평가 등 '연결/지분법' 회계처리 중요성 강조

##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KAM)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감사인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KAM에 대해 충분한 논의·이해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 운영 내실화·산업전문성 갖춘 감사인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화 기대 ”

## 주요 개정 내용



###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모범기준 규정화
- ☑ 주요 용어, 보고서 서식 정비
-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



###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 ☑ 산업전문성 산업분류 (11개) 및 산업전문가의 분류 기준 마련
- ☑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요구시,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 ☑ 수주산업, 금융업 (4개)은 '24년, 타 산업 (7개)은 '25년부터 시행



###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 위한 관련서식 개정

-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



###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 추가
- ☑ 사후심리 점검방법 보완

#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Q.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요?**

A. 감사위원회는 주요감독 영역 중 하나로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명확화**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역할수행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운영이 허용됩니다. \*\*



※ **현행**에도 내부통제위원회는 있으나 **CEO·관련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대표이사 산하 조직**으로, 이번에 권고되는 내부통제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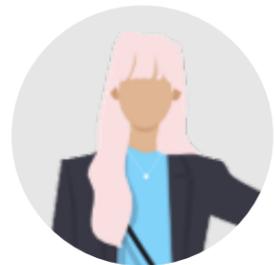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06.2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06

**Q.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① 내부통제 **기본방침 전략**,
- ② 임직원 윤리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 ③ 책무구조도 적용대상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 ④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사외이사의 책임

Q. 당사는 최근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규제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이 당사를 상대로 당사 감사위원 3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청구했고, 당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않자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동 위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관여한 바가 없는데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나요?

A. 최근 사외이사의 의무·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대법원도 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시**를 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위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적극적 지시·관여가 없었더라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대한 **구축·작동 노력이 없었다면**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 주요 포인트

- 회사의 상무에 미종사하는 이사도 대표이사·사내이사와 동일한 감시 의무 부담
- 쏠 이사가 적어도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되도록 동 의무 부담
- 이사는 보고 건만 감독하는 것으로는 동 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추상적·포괄적 지침·사전교육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불인정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